



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

판 결

사 건 (인천)2022나14248 해고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곽병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합57369 판결
변론종결 2023. 6. 15.
판결선고 2023.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2019. 1. 24.까지'를 '2019. 1. 23.까지'로 고쳐 쓰고, 제3면 제7~8행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술 등 행위가"와 제6면 제9~10행의 "그러한 행위가 영리 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를 각 삭제하며, 제5면 제16행의 "해고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에 대하여 2020. 11. 20. 해임을 의결한 징계사유인 원고의 저술 및 강의 동영상 촬영 등 행위(이하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라 한다)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피고 대학에서의 강의의 질을 향상시켜 담당 교수로서의 직무 능률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는 피고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이사장 또는 학



교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겸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겸직의 승인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겸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체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겸직 미허가 등 복무관리를 위반한 다른 교수들에 대해 견책처분을 하거나 경고, 주의를 준 것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가 35년간 동문회 창립, 산학협력단 설립 및 활성화, 대학 홍보와 학생 입학 및 취업에 기여하는 등 피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이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대하여

갑 제3, 5, 6호증, 을 제2 내지 4, 5,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를 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영리활동으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업무에 해당하여 해임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는 '영리업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지침 제4조(영리업무의 금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는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규정



하고 있다. 확인서(을 제9호증), 각 계약서(을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14개 업체와 동영상 강의 콘텐츠 판매 계약 등을 체결하고, 동영상 강의 및 직접 저술한 수험서를 판매하여 그 대가로 1,458,578,509원을 수령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2017. 4. 29. 이후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행위임이 명백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저술 등 행위가 휴일을 활용하여 1년에 약 8일 정도의 적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라며 피고 소속 교원으로서 원고의 직무 능률을 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주)J, (주)I 등과 체결한 각 동영상 강의 제공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콘텐츠의 유지보수 및 운영업체의 개선 요청사항 처리, 원고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학습 장애요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을 제11호증의 5, 제11조)', '인터넷강의 서비스 일정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교안 및 촬영을 완료하여야 한다. 동영상 강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법 개정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해야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안의 오자, 오답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보완해야 한다(을 제11호증의 7, 제4조)' 등 운영업체의 요청에 의해 원고가 비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출판사 또는 강의 동영상 제공 업체와 체결한 각 계약은 대부분 계약 기간 자동연장 조항이 포함되어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기간까지도 지속되어 온 점, ③ 원고는 원고가 촬영한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인 'K' 중 '교수님과 질의응답'란에 자신의 이름으로 수강생의 질문에 대하여 다수의 응답을 작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운영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접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응답 중 대부분은 평일에 작성되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고도 교원으로서의 업무시간에 응답



을 해주었다고 자인하였던 점, ④ 원고의 각 동영상 강의 촬영기록표를 보면 각 촬영 일자가 휴일로 되어 있고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데에 오로지 해당 촬영시간만큼만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출간한 수험서 및 동영상이 다수여서 동영상 강의 재촬영 및 수험서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감사원 문답서(을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 또한 '영리보다는 연구활동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를 '영리'로, 이와 구분되는 원고의 교수로서의 직무를 '연구활동'으로 지칭하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B대학 소속 교원으로서의 학생교육, 연구활동 등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능률이 저해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B대학 연구영역 인정 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이론 40% 이상인 수험서 저술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는 원고의 전공분야인 산업안전기사 분야에 대한 것이며, B대학의 주된 목표 중 하나가 학생들로 하여금 산업기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는 오히려 직무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관련 별표 5-2 연구영역 인정범위 및 기준 1의 마(갑 제5호증)'에 의하면 시중 출판사를 통해 ISBN 등록되어 판매되는 저서(이론내용 40% 이상 포함된 문제류)에 대하여는 연구 실적을 50%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기술한 수험서가 피고 인사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평가받는 저서의 일종에 해당되는지, 나아가 위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저술 등 행위가 원고의 전공분야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 소속 B 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 등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 중의 하나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재학생들도 아닌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촬영하여 제공하고 수험서를 판매한 원고의 행위가 피고 소속 교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 학생교육, 학업연구 등의 직무에 부합하여 이를 대체 또는 보충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2) ②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를 한 것은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 복무규정 제9조(겸직금지)는 '교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소속 교직원에게 위와 같은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교직원 본연의 업무인 피고 소속 학생에 대한 교육, 학생지도, 연구 활동에 전념할 것이 요청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수년간 다수의 사기업체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수험서를 집필·판매해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고, 원고가 위 계약에 근거



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강의 집필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아온 것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 본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영리 업무로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해임되기까지 이 사건 저술 등 행위에 대하여 복무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겸직 업무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9. 9. 27.경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이후 B대학 H캠퍼스 측에 겸직 승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겸직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고, 감사원도 원고의 행위가 겸직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영리행위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서 피고 소속 행정차장 L 명의의 확인서(갑 제14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원고가 2019. 9. 26.경 감사원 감사를 받고 행정처에 겸직 승인과 관련하여 문의하였고, 당시 피고 소속 행정차장 L은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H캠퍼스에는 겸직 승인을 한 사례가 없어 타 캠퍼스에 질의한 결과 겸직 신고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 사례를 원고에게 적용하기 곤란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확인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L이 작성한 또다른 서면(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라) 오히려 원고가 B대학에 근무해온 기간 및 재직 당시 원고의 지위에다가 B대학은 임직원행동강령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통해 겸직 신고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저술 등 행위가 겸직 승인이 필요한 영리업무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저술 등



행위에 관하여 겸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영리업무 및 겸직 위반에 대해 인지하였고요. 이것이 윤리와 도덕에 위반이 된다면 당장 그만둘 생각입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원고 스스로 2019. 9. 27.경 B대학 H캠퍼스 산학협력처에 '원고가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거나 수험서 집필 등 업무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겸직허가 신청이나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시인한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늦어도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무렵 겸직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를 중단하거나 겸직의 승인을 받으려고 시도하지도 아니하였다.

3) ③주장에 대하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법리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에서 징계양정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로 상당히 큰 이득을 취하였고, 겸직업무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감사원 감사나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까지도 영리행위를 지속하며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영리행위를 계속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 인사규정에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 6)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징계위원회는 위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까지 가능성에도 원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으로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기간 동안 연구 및 학내외 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을 탁월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대학에 대한 여러 기여와 포상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원고와 비슷한 사례의 다른 교수 68인에 대하여는 견책, 경고, 주의 등이 내려진 데 비하여 원고에게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이 내려진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최근 복무관련 처분결과 및 관련업무 처리기준 알림(갑제10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자료만으로는 위 각 처분결과의 기준이 되는 사실관계, 각 사안에서의 영리성·계속성의 정도, 처분 대상자의 개전의 정 등 징계양



정에 대한 제반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시한 다른 사안에 대한 표면적인 징계 사유를 보고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진

 판사 최은경

 판사 심용비